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및 공공저작물 소개

한국문화정보원
변호사 이선민



AGENDA

I 저작권 일반

II 공공누리제도

III 저작권 분쟁 및 상담사례

IV 질의응답



I 저작권 일반

I-1 저작물이란?

I-2 지식재산권

I-3 저작재산권의 제한

I-4 출처의 명시

I-5 저작자

I-6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I-7 기타 개념 확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



저작권 침해?

-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 제2조 제1호)

➔ 저작물의 예시(법 제4조 제1항)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연극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동작으로 표현된 창작물
 - 연극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연기의 형(型)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무
 - 각본은 어문저작물, 연기 자체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음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대법원2005.10.4.자2004마639 결정)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도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

저작인격권

- ☑ 공표권
- ☑ 성명표시권
-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 복제권
- ☑ 공연권
- ☑ 공중송신권
- ☑ 전시권
- ☑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권 (저작권법)

지식 재산권

특허청에서 심사 후 출원 등을 해야 권리 발생

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94조)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실용 신안권

산업상이용할수 있는 **물품의형상, 구조, 조합에관한고안**
특허보다 낮은 정도의 기술적 창작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법 제2조)
: 특허, 저작권법상 보호

상표권

상품 생산,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기호 등 (상표법 제2조 제1호)인 상표 중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제한 (법 23-38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업무상 이용이 안됨



공개적 정치적 연설
편집 이용은 안됨



학교교육목적
교과용 도서, 시험문제



시사보도
시사적 기사, 논설 복제



공표된 저작물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서관 자료 복제



점자, 수화 변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성립 요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공표된 저작물



주종관계 - 시장 수요의 대체성
정당한 범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인용목적, 출처명시,
개작인용·요약인용 문제
공정한 관행



대법원 2011도5835 판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중략)
-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대법원 2012도10786 판결

영리적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 ☑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 러브레터 사건 (2004카합344)

적법

인용영화의 등장인물이 비디오(피인용 영화)를 시청하는 장면,
총 110분에 달하는 인용영화의 총 상영시간 중 불과 30초 인용한 것은 적법한 인용

➔ 스타 UCC 사건 (2007가합18479)

위법

프로그램에서 연기자 이순재씨가 출연한 영화 중 일부 장면 3분 정도 방영,
상업적 이용이고 유료 방송인 점,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용 시 주의점

- ☑ 비영리적 이용, 공익적 이용이 요건은 아님
- ☑ 유료 판매 이미지, 영상은 분쟁 가능성 있음

출처표시 의무

- 1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 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한글과 컴퓨터, 워드, 파워포인트 등
**문서 제작프로그램을
 사용한 문서**

①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



② 문서가 업로드 되는
 인터넷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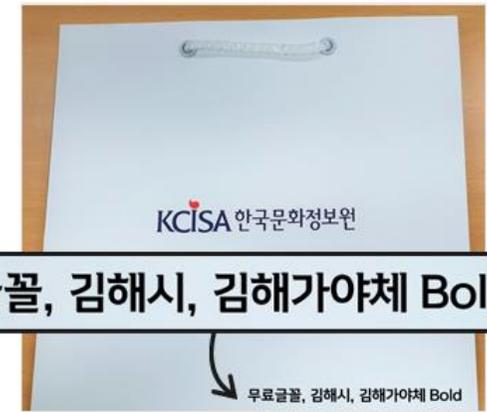


③ 파일명

📁 파일명(0000)_글꼴명.hwp

제품(상품)

① 제품상세설명서,
 포장박스 등
 인쇄가 가능한 부분



② 제품 설명
 인터넷 페이지





출판물

① 출판물 표지 (우측 상단부)



② 출판물 내부



본 사례집에 쓰여진 폰트는
'무료글꼴, 경기도, 경기천년바탕 Bold'
'무료글꼴, 경기도, 경기천년제목 Bold'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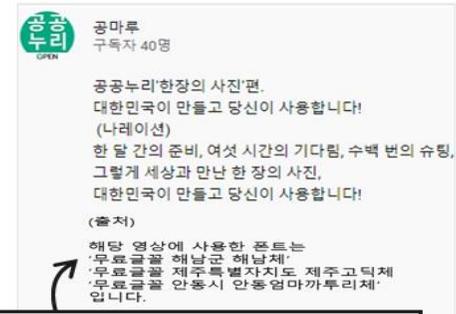


영상

① 엔딩크레딧



② 영상이 업로드 되는 인터넷 페이지



(출처)

해당 영상에 사용한 폰트는
'무료글꼴 해남군 해남체'
'무료글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고딕체'
'무료글꼴 안동시 안동엄마까투리체'
 입니다.

사진

① 사진 하단



② 사진이 업로드 되는 인터넷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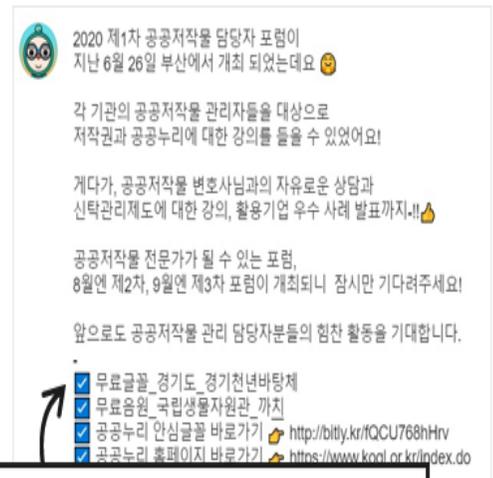
글꼴 무료글꼴_서울시_마포배낭여행체
 무료글꼴_순천시_순천체

음원

① 디지털 파일 또는 파일명

 파일명(0000)_글꼴명.mp4

② 음원이 업로드 되는 인터넷 페이지



무료글꼴_경기도_경기천년바탕체



포스터, 현수막, 간판 등

상하좌우 모서리 빈 공간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을 활용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0.6.8 (월) - 2020.7.7 (화)

저작권 걱정없이
지원받자!

신청자격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접수장소
간단한 지원서만 작성하고 제출하면 손쉽게 끝!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www.kogori.kr/index.do>)
공공누리센터에서 접수 및 공공누리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제출
support@kocisa.kr

지원내용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지원규모 : 총 5개 기업 지원
신청기간 : 2020년 6월 30일 까지

**지원사업
신청일지**
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14:00 ~ 16:00
장소 : YouTube에서 '공공저작물 사업' 검색

신청방법
2단계만 거치면 최종신청!

Step 1 : 신청접수 마감
Step 2 : 서류심사
Step 3 : 발표심사

* 자세한 내용은 개별 홍보 게시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국인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저작물입니다.
공공누리 사이트 (www.kogori.kr)에서 정해진 공공저작물 검색 및 지원방법을 참고하세요.

무료글꼴-포천시-포천막걸리체
 무료글꼴-고양시-고양일산체
 무료글꼴-경기도-경기천년체

원칙 저작물을 창작한 자(법 제2조 제2호)

예외 업무상 저작물(법 제9조)

▶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았지만 저작자가 되는 중대한 예외



성립요건

-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Quiz 1

다음 중 A 기관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Quiz 1

다음 중 A 기관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1 저작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2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구분		기산	보호기간
공공기관 등의 단독저작물		공표시	70년
공공기관 등의 공동저작물	·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와의 공동저작물	공표시	
	· 개인과의 공동저작물	저작자 사후	
위탁 또는 양도에 의한 공공저작물	·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회사, 법인 등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	공표시	
	·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영상저작물(제 42조)		공표시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5조(2차적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Quiz 2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O

X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II 공공누리 제도

III-1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III-2 저작권법 제24조의 2 시행에 따른 변화

III-3 공공누리(KOGL)

III-4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차이

III-5 공공저작물 제공원칙

III-6 저작재산권 관리 절차

III-7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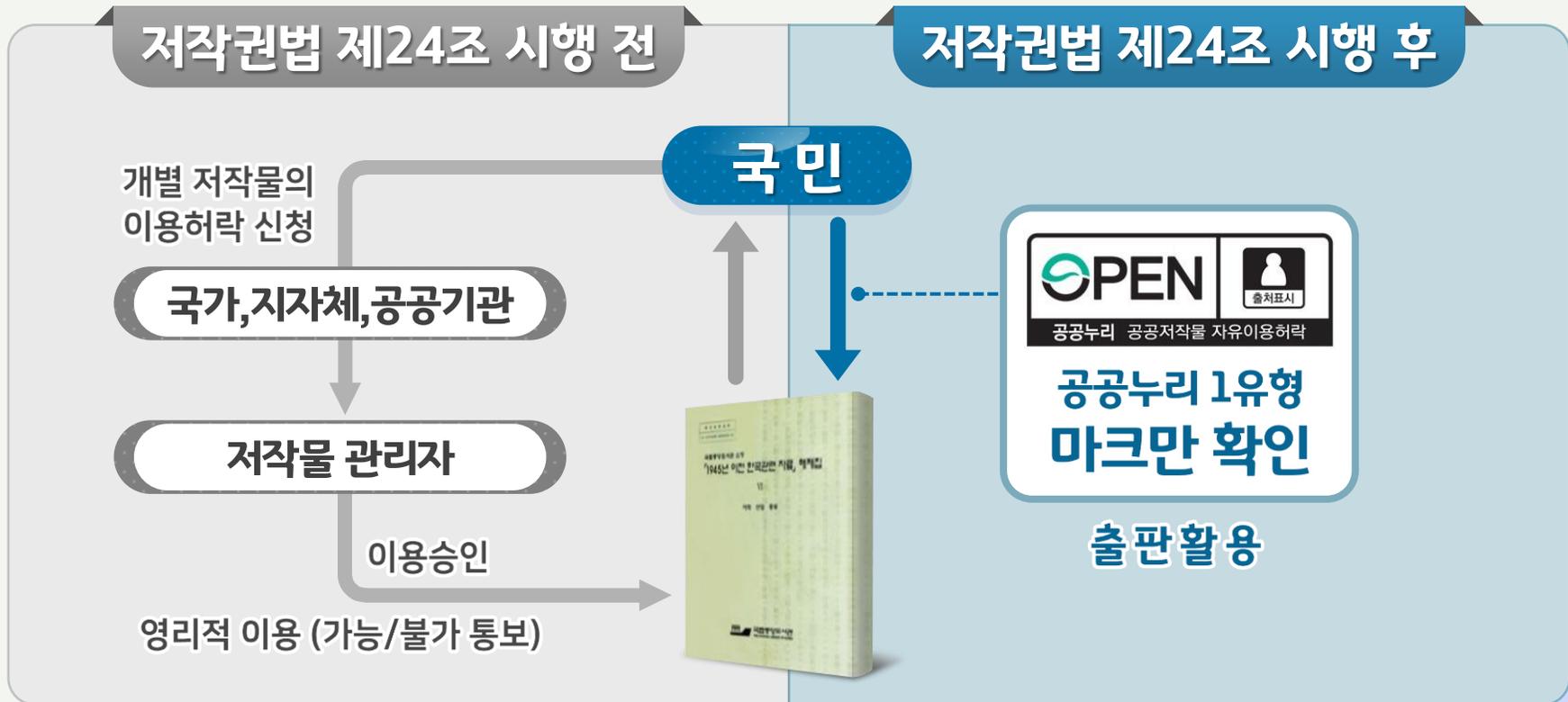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근거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2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구보고서를 일반국민도 알아보기 쉽게 보완해서 출판해 볼까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기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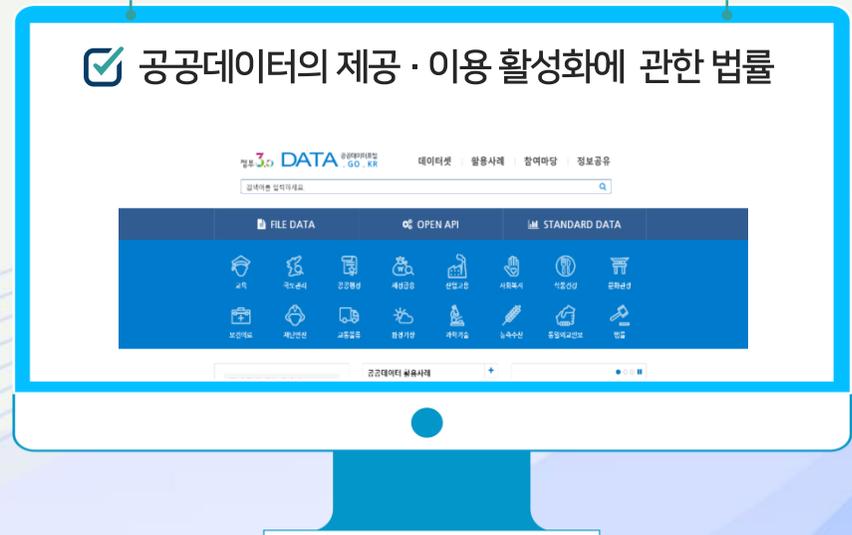
이용허락 유형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제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누리(kog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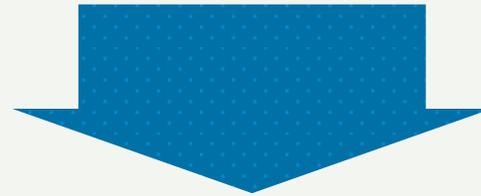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근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본원칙	제4조 제2항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공중단	제15조 제1항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① 변경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상업적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③ 기관의 유지,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 곤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후
제2유형~제4유형 적용

※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충돌을 고려하여 적용

공공저작물 제공 원칙

-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또는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저작권법 제36조,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



원칙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 허용해야 함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

제시 이용자에게 이용조건 제시 가능
출처표시의 내용 및 범위 등

- ①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된 사항 (출판 전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등)
- ②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삽입 조건

사례 1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제4유형)이 부착된 저작물
상업적 출판을 한 경우

제공 중단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제1항 제1호
- 각 기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중단(또는 이용중단 요청)등 조치 가능



사례 2

상업적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후 신탁 또는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 부착



사례 3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경우

신탁제도 이용

공공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1 권리신탁

이용현황 보고 및 저작권 침해대응

5

2 신탁 저작물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탁 저작물을 전시·홍보,유통

3 이용허락 요청

이용허락 4

이용자

개인·콘텐츠 제작업체·유통업체 ...

국가 및 지자체

저작권재산권 전부 보유

1 자유이용가능

제 1유형 적용

2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포함
-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포함
-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포함

자유이용불가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국가)
- 2.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지자체)

직접/신탁관리
사용료 징수

※ 예외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관장 승인 시
자유이용추진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재산권 일부 보유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른
공공누리 적용

4 공공누리 부착
동의

1~4 유형 적용

5 공공누리 부착
미동의

자유이용불가



공공 기관

저작권재산권 전부 보유

1 자유이용가능

제 1유형 적용

2 경영상 자유이용곤란 사용료 징수 필요

저작권위원회 등록

직접/신탁관리 사용료 징수

기관장 승인 자유이용추진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재산권 일부 보유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른 공공누리 적용

3 공공누리 부착 동의

1~4 유형 적용

4 공공누리 부착 미동의

자유이용불가



저작권자는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가능

저작재산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 (법 제45조)

⇒ 계약 문구 예시

1 저작권에 대한 약정없이
저작물 제작 위탁

“ 제작업체에 저작권 귀속 ”

2 결과물은 ○○소유로 함

“ 소유권만 귀속 ”

3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함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인에게 귀속 ”

4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함

“ 전부 양수인에게 귀속 ”

제○조(확인 및 보증)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①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③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 ④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조(면책 등)

- ☑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갑"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Ⅲ 저작권 분쟁 및 상담사례

Ⅲ-1 저작권 침해 및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Ⅲ-2 초상권 관련 분쟁 사례

Ⅲ-3 초상권 관련 권리처리 방법

Ⅲ-4 폰트 분쟁사례

Ⅲ-5 이미지 관련 분쟁사례

Ⅲ-6 저작권 분쟁 발생 예방

Ⅲ-7 저작권 관련 분쟁 대응방안

Ⅲ-8 공모전 공지, 주의사항!



형사상 제재

권리침해죄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①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항)

예시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

부정발행죄 등

제13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출처명시 위반죄 등

제138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 초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사진을 이용 /
출판물의 재출판시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민사상 구제제도

침해금지 청구

제123조 제1항 : 침해 행위의 정지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제123조 제2항 :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제125조 : 권리 침해행위 +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손해발생

명예회복

제127조 :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머드축제 포스터 사건

지자체가 개최한 머드축제에 참가한 일반인을 촬영하여 포스터에 이용,
사진 제공자에게 초상권 동의 유무를 문의하는 등 조치 없어, 위자료 지급

➔ 박찬호 평전 사건 (98라35결정)

전직 기자가 박찬호 평전 출판 시 사진 이용,
공적 인물의 경우 일반인보다 수인 한도 높으므로 평전에 초상 이용 가능



초상사진 이용시 주의점

- ☑ 초상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 ☑ 유명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수인 한도 높아짐

동의를 구하지 못한 인물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

초상이용 동의서 (샘플)

본인은 (기관)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예시 주체적 역할을 한 사람

대표자 및 직원

묵시적 이용동의를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기관의 대표자, 국가기관의 장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들 (기관 내부인)

기관의 장 모임 · 협약

묵시적 이용동의를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중국후안시장, 문경시장의 경우(각 기관의 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이현웅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으로서 다양한 문화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축적·유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대표자, 국가기관의 장의 경우

예시 주체적 역할을 한 사람

발제자 · 강연자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이용동 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발제자, 토론자의 경우



수상자의 경우

수상자 · 기증자 등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이용동 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강연자의 경우(사진의 이용가능성 인식 예상됨)



도서 기증식의 기증자의 경우

예시 소극적 참여를 한 사람

행사 단순 참석자

동의를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 처리



발제자, 토론자의 경우



수상자의 경우

대표자 방문사진

동의를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 처리



강연자의 경우(사진의 이용가능성 인식 예상됨)



도서 기증식의 기증자의 경우

Quiz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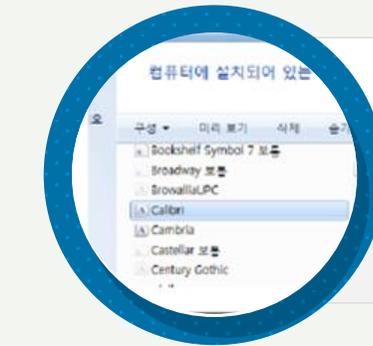
뒷모습을 찍으면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O

X

➔ 서체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p>폰트 도안 저작물성 부정 보호대상 아님</p>			<p>폰트 파일 저작물성 긍정 보호대상</p> 
---	---	--	--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 처 방 안



양벌규정(제141조)

직원이 불법다운로드 받은 경우,
기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외주제작

저작권 침해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조정제도 이용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분쟁발생



지급명령

2주 이내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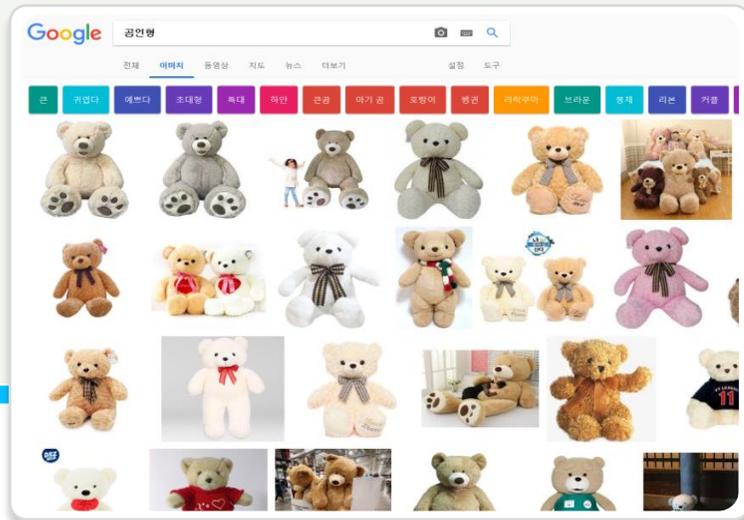
Quiz 4

글꼴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가?

O

X

⇒ 이미지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곰인형

대처방안



합의가 필요한 경우
(단, 합의금 산정 근거 확인)



약관확인
"무료 이용" "이미지 공유" 주의!



외주제작 입증자료 확보
침해 사실 알았다면 이용 중단



확인 및 보증
계약서 작성 중요

저작권 분쟁 사례



FREE ZOOK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에 한함
-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ZOOK을 사용할 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기업, 관공서, 병원 등에서 유료 제품을 꼭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만약 **개인용 무료 제품을 무단 사용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시
주의점



— 상업적 용도로 SW, 서체,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



— SW, 서체, 이미지 등을 저작물로 인정
내부 규정을 만들고 관리



01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02

저작물
(저작권자)
인가?

03

작성자가
누구인가?
(직원or외주)

직원이 불법 다운받아 작성한 경우

- ☑ 기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양벌규정 (제 141조)
- ☑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단, 합의금 산정 근거 확인)
- ☑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분쟁 발생시,
조정제도 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 **지급명령**의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외주 제작한 경우

- ☑ **외주제작**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 ☑ 침해 사실 알았다면 이용 중단,
외주제작 입증 자료 확보
- ☑ **주의점**
계약상 저작권 이용 범위 확인 필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공모전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공정위)

➔ 입상작에 대해 별도 협의로 저작권 취득 또는 이용허락 필요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시

-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한다.
- 주최 측은 수상작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정 예시

- 주최 측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합당한 보상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 주최 측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IV 질의응답

